

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 및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,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6. 8. 14. ~ 2026. 8. 28.
2. 공고내용 :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통지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
3. 공고대상 : 붙임 참조
4. 공고사항
 - 가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,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하여 운행정지 명령 예고 대상입니다.
 - 나. 소유자는 위 공고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, 이행하지 않을 시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가해지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
 - 다.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81조 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5. 문 의 처 :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(☎032-762-6802)

2026년 8월 14일

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

